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중 입소자 입·퇴소자 관리규정

제1조(입소) ① 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 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입소자의 입소절차는 관계법과 계약의 절차에 의한다.

단, 행정에서 긴급 요청 시에는 우선 일시 보호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③ 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후생복지차원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요청이 있을시 직계존속(노인)에 대하여 단기간 및 탁노 형태로 일시적 입소생활을 할수 있다.

④ 지역사회외 소외계층 또는 가족으로 부터 학대를 받거나 학대가 예상되어 행정기관장(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요청 있을시 노인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다.

제2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80인으로 한다. 단 관련법에 의하여 특례대상자는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상호 간 계약에 의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④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기준표에 의하여 계약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 계약 할 수 있다.

⑤ 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외에는 별표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

⑥ 본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종사자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입소자에 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감액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감액 및 감면 금액은 이용 계약 시 정한다.

제4조(계약자.당 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가.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갑”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등에 대해 알 권리

2.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바. 자유로운 시설물 이용의 권리

사. 정해진 규정 내에서 정당한 요구 권리

3.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의 서비스내용, 생활전반에 대해 정해진 규정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 할 권리

제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10일 이상 입원(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계약서상 정하는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단 특례대상자가 입소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제6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시설운영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그 외 불가피하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비급여항목 등)

제7조(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수납)

- 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식재료 등)의 납부시기는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식재료 등)의 납부의무자는 주계약자, 차기보호자 등 입소당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후 납부의무자 변경 시에는 구두, 유선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③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식재료 등)의 미납이 발생할 경우 아래 절차에 의해 조치한다.

1. 1개월 미납 시(익월 말일까지 미 입금 시)
: 유선연락(전화, 핸드폰 등)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2. 2개월 미납 시 : 독촉장 발송(우편발송)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3. 3개월 미납 시 : 2차 독촉장 발송(우편발송)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3개월 후(2차 독촉장 발송 후 정해진 기일내 수납되지 않을 경우)
 - 4개월 미납 시 : 1차 내용증명 발송(납부요망)
 - 5개월 미납 시 : 2차 내용증명 발송(법적조치)
 5. 지급명령 신청 : 2차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당기일까지 수납되지 않거나, 수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납부의무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사전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변경 (납부의무자, 납부시기 등)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의 절차와 미납에 따른 조치는 생략할 수도 있다.

제8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 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2) 대체 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나.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 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라.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치료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잤은 석션 등)를 제공 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제9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 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 하도록 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협약서에 의하여 정기적 방문을 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정기 병원 진료 시

- (1)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토록 한다.
- (2)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3)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 (1) 응급상황 발생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2)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시 처리 절차

-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2) 입소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3)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 할 경우 (원거리 및 타지역)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 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사용 및 주의)

① 입소 어르신은 요양원내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하는 것은 시설의 이용 규칙에 따르며, 의료기구등 관리자의 지도하에 이용하는 것은 담당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 내 위험지역 등에는 주의표시등을 하도록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요양원)은 “갑”(입소자나 보호자)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입소자나 보호자)는 “을”(요양원)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제12조(퇴소) 연고자가 입소생활자의 동의하에 인도를 요구 하거나 본인이 연고자의 동의하에 퇴소코자 할때는 해지신청서 제출 하여 원장의 승인하에 퇴소조치 한다.

제13조(건강진단) 환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영양급식) ①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집단 급식소(기업체)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식단 작성은 매 분기별, 월별, 주간별로 작성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식단에 의한 부식 구입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경과된 식단표는 식단철에 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정비 등) 입소시설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시설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2. 건물 내·외부의 도색은 정기적으로 실시
3. 월동대책을 수립 동절기에는 난방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 만전을 기한다.

제16조(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장은 집단 수용시설에서 예측되는 화재 및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능력을 경주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계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온방 관리여부 수시 점검 실시
3. 차량 정비 점검 등 각종 시설물 및 물품관리 철저
4.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도 방화단 설치운영 등

제17조(생활지도) ①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생활 지도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입소자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생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 (L)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기 타	☒ 일반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진 주 요 양 원	시설종류	노 인 요 양 시 설
	시설장성명	김 지 현 (인)	연락처	763-2541~2
	주 소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98번길 46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제1조 【 목 적 】

- ①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② ‘을’ 은 ‘갑’ 에 대하여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이에 ‘갑’ 과 ‘병’ 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상호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행받은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 ③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⑥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⑦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익월 25일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5일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납부(현금이체)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로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요양보호사 채용기준 2.1:1>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원	83,910원	79,240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		
	식재료비(1식)	2,300원		
	간식비(1회)	1,100원		
	이/미용료등	-		

◇ 시설급여 (1일) <요양보호사 채용기준 2.3:1>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86,030원	79,810원	75,360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		
	식재료비(1식)	2,300원		
	간식비(1회)	1,100원		
	이/미용료등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12%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8%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요양보호사 채용기준 2.1:1			요양보호사 채용기준 2.3:1		
		1등급	2등급	3~5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총계		2,953,500	2,757,300	2,617,200	2,820,900	2,634,300	2,500,800
요양비(비급여제외)		2,713,500	2,517,300	2,377,200	2,580,900	2,394,300	2,260,800
요양 보험 부담 비용	요양급여비용 (80%)	2,170,800	2,013,840	1,901,760	2,064,720	1,915,440	1,808,640
개인 부담 비용	계	782,700	743,460	715,440	756,180	718,860	692,160
	요양급여비용 (20%)	542,700	503,460	475,440	516,180	478,860	452,160
	비급여 (식재료비,간식비등)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 ‘갑’ 과 ‘을’ 그리고 ‘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 의 의무

1. ‘갑’ 의 건강관리 협조
2. ‘갑’ 의 신변이상을 ‘병’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 의 의무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갑’ 의 시설생활, 건강관리(입원, 병원진료 상담 등) 관련으로 ‘을’ 의 연락을 받은 ‘병’ 은 속히 결정하여 ‘을’ 에게 통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의료적 치료가 30일 이상 지속되어 장기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갑’의 입소 시 나타나지 않은 치매증상이나 기타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시설’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병’에게 상담하고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나 ‘을’의 노력에도 불가하고 ‘갑’과 ‘병’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대안적 방법이 없을 때

제6조 【 퇴소 】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거나 무리한 치료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 ⑤ ‘갑’의 급작스런 건강악화로 사망 징후 발견 시 ‘을’은 임종직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시간이 촉박하여 불가피하게 사망에 이른 경우 ‘병’은 그 책임 문제에 대해 ‘갑’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목적시설의 표시 및 요양실의 배정 】

- ① 목적시설은 진주요양원(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용 등) 그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는 ‘갑’은 다른 이용자와 같이 이 시설물을 공용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 또는 ‘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갑’ 또는 ‘병’ 이 입소 시 과거의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갑’ 이 건강진단서 등에 나타난 질병 및 발견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6. ‘갑’ 의 입소 후 치매, 뇌경색 등의 복합질환자로서 환경의 변화, 장거리 이동 등의 요인으로 입소 24시간 이내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음으로 이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7. 제18조 2항에 표기되지 않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을’ 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
8. 상기 보호자()는 위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하였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 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25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시설장 김 지 현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